

2020년 1월 1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팀 팀 장 안유영(044-201-2371), 사무관 김철기(2374) / 제공일: 1월 16일(총 7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동물실험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 마련 및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 주 요 내 용 》

- ◆ '18.3.20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 사역동물 실험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기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실험동물의 공급출처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20.1.17. ~ 2020.2.26., 40일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19세 미만)의 동물*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2020.3.21.)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마련, 이를 2020.1.17.부터 2020.2.26.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어류를 말하며, 그 사체까지 포함 ** 붙임1 참조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9.6.6. 발표한 「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우선, '18.3.20 공포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2020.3.21.)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마련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에게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을 심의·감독하는 위원회
 -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협약을 맺고 윤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도 허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을 대폭 축소한다.
 -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사역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 「동물보호법」 제24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험의 사유·절차를 대폭 축소한다.

○ 현재는 법 시행규칙(제23조)을 통해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등의 경우* 사역동물 등으로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 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국가, 지자체, 의료기관, 대학교 등)

-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실험” 사유를 삭제하고, “사역견의 선발 및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 사유를 신설한다.

- 또한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마지막으로, 사역동물 등 실험동물의 사용실적 통지 의무를 신설한다.

○ 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해 사역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현황 및 모든 실험동물의 공급 출처를 검역본부에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 이를 통해 사역동물 등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실험 관련 정책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본조신설 2018. 3. 20.]</u></p> <p><u>[시행일 : 2020. 3. 21.] 제24조의2</u></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u>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u></p> <p>2. <u>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u></p> <p>3. <u>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u></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p>	<p>제23조(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① ----- ----- ----- ----- -----.</p> <p>1. ----- ----- <u>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확산방지를 위한</u> ----- -----</p> <p>2. <u>사역견 선발 또는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u></p> <p><u><삭 제></u></p> <p>② ----- ----- ----- ----- -----</p> <p><u>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u></p>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신 설>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

-----.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①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려는 자는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해당 학교와 다

른 학교가 법 제2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4.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해부실습으로서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설치·운영하며 법 제26조제1항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동물 사체에 대한 해부실습을 하게할 수 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해부실습의 심의를 하려면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수의사 또는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2년 이상 참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